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5항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라 급수시설이 정수 처분된 자에게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체납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코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8년 11월 8일 ~ 2018년 11월 21일(14일간)
2. 공고내용: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처분 사전 예고
3. 법적근거: 「수도법」 제68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4. 압류예고 재산표시

채무자 (체납자)	압류예고 재산의 표시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	건물내역
김*영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12번길 4-1, 국제아파트	제지하층 제101-13676호	1층 59.50㎡ 지하 96.43㎡
강*기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12번길 4-1, 국제아파트	제2층 제202호	43.47㎡
강*희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12번길 4-1, 국제아파트	제2층 제203호	12평4홉9작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급수전 현황			체납현황		정수처분
고객번호	수용가	주소	체납기간	금액	
005757-101	국제아파트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12번길 4-1 (부평동2가)	2016. 11월~ 2017. 11월	3,228,800	2017. 3. 29.

6. 납부안내

- 상기 급수전 수용가는 공고기간 내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법」 제68조 의거 요금 등의 강제징수와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귀하의 부동산을 압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요금부서 ☎ 051-669-501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8일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동부사업소장

